평생학습도시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0년 6월 23일 (수)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임해규 의원실 · 평생교육진흥원

공청회 일정

10:00~10:05 국민의례

10:05~10:10 내빈소개

10:10~10:25 축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10:25~10:30 인사말 -국회의원 임해규 ·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10:30~10:50 발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권두승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 명지전문대학)

좌장: 최운실 **회장** (평생교육총연합회)

10:50~11:50 토론

양 병 찬 교수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이 희 수 교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백 은 순 본부장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

이 현 숙 소장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 규 태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11:50~12:00 자유토론

12:00~12:10 종합정리 · 폐회

목 차

발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3 권 두 승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명지전문대학)
토론
양 병 찬 교수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52

녹음이 우거진 계절, 지난 정책토론회 이후 평생학습인 여러분을 이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심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로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한국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대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해왔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의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싹틔우는 자리였습니다. 봄에 새롭게 피었던 싹이 계절이 지나 꽃을 피우듯이, 지난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논의들이 이제 꽃을 피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 및 발전의 밑바탕이 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그 동안 하향식인 국가 지정으로 진행해 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자생적 특화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상향식인 인정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모아주시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새로 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 발제를 맡아 주신 권두승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님과, 토론 좌장을 맡아 주신 최운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김규태 국장님, 이희

수 교수님, 양병찬 교수님, 이현숙 소장님, 백은순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불어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아오신 각계의 관 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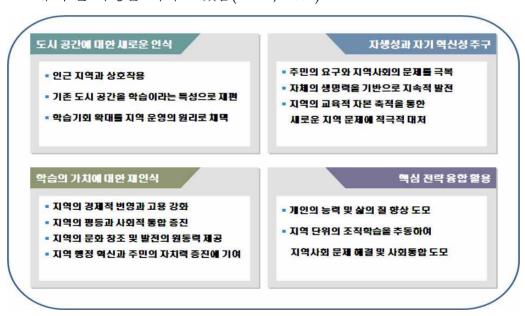
국회의원 임 해 규, 평생교육진흥원장 박 인 주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권투승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명지전문대학)

1 평생학습도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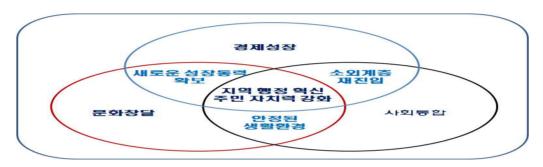
-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 거듭나기를 위한 운동으로서(김신일, 2007),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임.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임(양병찬, 2002)
- □ 평생학습도시는 1)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자생성과 자기 혁신성 추구, 3) 학습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4) 핵심 전략 융합 활용이라는 4대 추진 특성을 지니고 있음(KEDI, 2007).



[그림-1] 평생학습도시 특징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7-38.

- □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여 미래지향적 지역 활성화를 추구함
 -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고용 강화
 - 지역의 평등과 사회적 통합 증진
 - 지역의 문화 창조 및 발전의 원동력 제공
 - 지역 행정 혁신과 주민의 자치력 증진에 기여



[그림-2] 지역운영 원리로서 평생학습의 대상 영역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 평생학습도시는 표면상 두 가지 학습 전략, 즉 개별학습과 지역별 단위 조직 학습을 융합하여 활용함. 주민 개개인의 개별학습을 격려하고 촉진 함으로써 개인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지역 단위 조직학습을 추동하여 지역사회 당면 현안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 도모



[그림-3] 평생학습도시 목적과 전략

자료출처: OECD(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Paris: OECD. p. 31; 이희수 외(2002). 평생학습도시/마을 조성 정책 동향과 과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학습도시로 가는 길. p. 57.

2

평생학습도시 지정제의 추진성과

2.1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

- □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 3개(대전 유성구, 경기도 광명시, 전라북도 진안 군) 지자체를 시작으로, 2002년 3개(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 □ 2003년 5개(인천 연수구,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남도 거 창군, 제주도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 □ 2004년 8개(서울 관악구,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금산 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신안, 무안), 경상남도 창원시)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 □ 2005년 14개(서울 양천구, 서울 성북구, 대전 달서구, 대구 동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구리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랍구도 익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남해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 □ 2006년 24개(서울 영등포구, 부산 연제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울주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화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서산신,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하동군)의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음
- □ 2007년도 19개(서울 강동구, 서울 강서구, 서울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가 지정되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32.8% 인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음

2.2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 2009년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학습도시 운영 현황을 1) 농촌형 평생학습도시, 2) 중소도시형 평생학습도시, 3) 도시형 평생학습도시로 유형화하여 ① 예산, ② 시설 수, ③ 프로그램 수, ④ 동아리 수, ⑤ 전문인력 수, ⑥ 평생학습참여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음(평생교육진흥원, 2009)

<표-1>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구분	예산(만원)	시설 수 (개)	프로그램수 (개)	동아리수 (개)	전문인력수 (명)	참여율 (%)
학습도시 총계	16,531,772	6,096개	25,107	3,966	130	28.70
학습도시 평균	223,402	82	335	52	1.71	20.70
농촌형	163,953	43	116	18	0.84	27.09
중소도시형	241,096	82	473	78	2.14	31.20
도시형	224,806	115	270	37	1.75	29.25

자료출처: 평생교육진흥원(2009). 2009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 특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이래 5년차인 2005년 부터 2007년까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 예산 집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 예산이 전무하였음. 반면에 2006년부터 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2007년부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2008년부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계속지원 예산이 집행되어 지원되었음

<표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714	104	100	100	10.4	105	100	107	100	100	7.01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600	600	1,000	1,600	2,800	3,000	3,800	_	_	13,400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계속지원	-	-	-	-	-	-	-	3,780	3,800	7,580
우수(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90	300	750	750	644	1,435	2,287	2,000	8,256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	1	-	-	-	60	300	200	150	200	910
학습결과 표준화	-	-	_	_	-	280	300	500	_	1,080
네트워크 구축 지원	1	-	_	_	_	_	675	1,154	2,500	4,329
조성사업관리	-	-	-	-	-	30	130	230	300	690
계	600	690	1,300	2,350	3,610	4,254	6,540	8,101	8,800	36,245

평생학습도시 추진관련 기존 지정제도의 한계점

1

2.3

국가 지정으로 인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의 어려움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가 선정한 기준에 통과한 지자체에 대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지정방식 의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임
- □ 국가 지정방식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국가가 지원한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 관련 예산이 미확보된 2007년 이후부터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전무한 상태임
- □ 기존 평생학습도시 및 예비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자 관련 법적 ·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이며, 비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여전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현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사실상 중단은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기존 국가지정 방식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체제를 인정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원과 관계없이 희망 지자체가 평생학 습도시로서 브랜드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도시재구조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운영 격차 극복 방안 필요

- □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을 1) 농촌형 평생학습도시, 2) 중소도시형 평생학습도시, 3) 도시형 평생학습도시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시설,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수, 전담인력 확보의 측면에서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현행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선정 근거로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다 지역화, 지방화 중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요구됨
- □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지표 개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재생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국가의 직접예산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역 자생장치 마련 필요

□ 평생학습도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관련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관련 예산이 꾸준히 지원되었음

- □ 또한, 2005년 이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제고 방안으로 '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예산이 책정되었음
- □ 그러나 2008년 이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 감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바와 다름없어, 기존 평생학습도시 및 예비 평생학습도시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재구조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여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도시재구조화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직접적 예산 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임
- □ 따라서 지자체가 '평생학습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평생학습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평생학습도시 구축단계 이후 예산 확보 및 운영 방향 제시 필요

- □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예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게는 3%, 많게는 91%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이는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 이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구축기를 지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안 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도시 안정화단계에서의 지역여건 및 특성, 지역민 의 학습요구 수준 등을 반영한 예산 확보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지자체 내 평생학습 전담 추진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

□ 현재 비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지역민에 대한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이 전무한 것은 아님. 따라서 이와 같은 평생학습도시 내 평생학습관련 전담조직의 신설 및 운영은 비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자체 내 평생학습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고, 기존 평생학습도시 내 전담조직도 '팀'에서 '과'로 승격하고, 전담조직의 명칭도 '평생교육(학습)'이라는 용어가 명시됨에 따라 그 역할에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필요

□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의 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사간 네트워크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의 자생적 질적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 시사

- □ 평생학습조례 제정 여부 변화의 분석 결과, 76개 평생학습도시 중 97%에 해당하는 74개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한국의 행정이 법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평생 교육관련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을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국가지 정방식으로 운영되던, 지자체 자율중심으로 운영되던 그 추진 및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함

- □ 평생학습도시 내 홈페이지 구축 여부를 분석한 결과, 76개 평생학습도시 중 95%에 해당하는 72개의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 해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은 1) 온라인상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2) 온라인상의 평생학습 정보서비스 제공, 3) 온라인상의 평생학습 정보서비 스 제공을 통한 투명성 제고, 4) 평생학습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의의를 지님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 시사

-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평생학습조례'가 제정되고, 대부분의 지 자체에서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 산하의 '평 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함
- □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지역사회 내 평생교 육 유관기관장이라는 인적자원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전략임.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관련 주체들의 모임을 통해 지역사 회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이는 효율적 평생교 육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시사

□ 평생학습관계자 연수는 평생교육관계자 간 '온/오프라인 만남의 기회 및 만남의 장' 제공을 통해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계자의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 한 평생교육의 질 제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관계자' 연수의 효과성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최근 평생학습관계자 연수는 '평생교육 영역', '평생교육기관 유형' '기관장 및 실무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세임

성과평가를 통한 질 제고 등의 지속적 사후관리의 필요성 대두

□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선정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나, 평생학습도 시로 선정된 이후에는 효과적인 지원 및 촉진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특별한 사후 조치가 평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생학습도시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성과지표나 객관적 평가체제, 자체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운영과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단계별평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음(손명호, 2008)

3

평생학습도시 인정체제로의 전환가능성 탐색

3.1 지정제와 인정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 지정제와 인정제

- □ 지정제와 인정제는 대상에 대해 특정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 의 평가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함
- □ 지정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인정제는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대상에 대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표 -3> 지정제와 인정제의 특징 비교

구분	지정제	인정제		
형태	정부고시형태 Top-down	기관제안형태 Bottom-up		
주체	중앙정부 주도 + 전문가 참여	협의체 주도 + 전문가 참여 (인정위원회)		
목적	정책적 목적	질 관리 및 개선		
범위	전체	전체 혹은 부분		
효과	직접적, 한시적 (예. 예산배정, 우선순위 부여 등)	간접적, 장기적 (예. 브랜드 가치 상승, 문화조성 등)		
지표	고정지표	고정지표 + 자율지표		
기준	상대적	절대적		
초점	사전관리중심	사후관리중심 (주기별 재평가)		

3.2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 의의

지역차원의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 인정

- □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교육환경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지역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

■ 지자체의 평생학습진흥정책에 대한 기준제시 및 지역평생학습진흥역량 개발

- □ 지역특성(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따른 인정지표개발 및 그를 통한 지역별 특화된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지역평생학습문화 진흥
- □ 인정지표개발 관련 기존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향후 인정받 고자 하는 지자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제시 위한 지표개발
- □ 인정심사에 탈락한 지자체에 대한 보완방법 제공과 추후 일정지표 충족 시 재인정 체제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역량개발 지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 및 유지

- □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 평생학습도시 인정주기를 3~5년 정도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촉구
- □ 지속적인 평생학습도시 사후관리 및 성과지표를 통한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인증서 발급과 그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4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추진체계

□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의 주요 3대 운영주체(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역할분담 체계 명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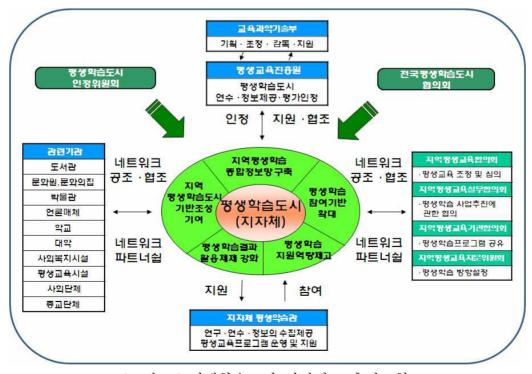
- □ 평생학습도시 인정추진을 위한 핵심역할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임무로 규정하고, 그를 통해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문화
- □ 평생학습도시 인정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학습도시인정제도 와 관련한 법적 정비, 인정위원회 위촉, 인정서의 발급 및 평생학습도시 추진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
- □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운영의 핵심은 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되, 운영상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도록 함
-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인정심사위원의 선발 및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정심사위원의 선발, 연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

<표 -4>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운영주체별 역할

운영주체	역 할
교육과학기술부	- 인정제도 추진, 인정위원회 위원 위촉, 인정서 발급 -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지원(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인정 제도 구축 및 관리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인정위원회 운영 평생학습도시인정제 홍보 및 사후관리 (평생학습도시컨설팅, 우수학습도시인증 등) 인정정보시스템 운영: 인정신청부터 기록 관리까지 온라인 시스템 운영,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사업관련 정보공시 및 관리 (법 개정시 반영)
평생학습도시 인정위원회	- 인정기준 제·개정, 인정 심의·의결, 취소 판정, 인정심사위원 선발· 활용(서류 및 이행심사) - 평생학습도시 사업결과 기록 유지·관리 조치 등



[그림 -4] 평생학습도시 인정 추진체제



[그림 -5]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추진모형

5

평생학습도시 인정기준의 설정 및 활용

■ 평생학습도시 인정기준의 활용 주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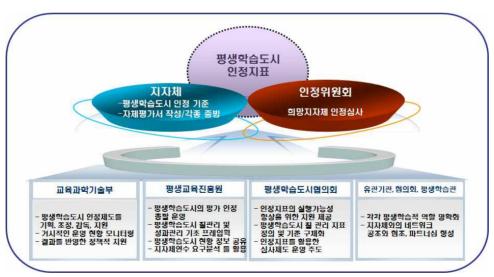
- □ 평생학습도시 인정기준의 1차적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인정평가에 있으므로, 평생학습도시의 인정평가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주체인 지자체와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는 인정지표의 주요 활용 주체라 할 수 있음
- □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 및 성과 관리가 가능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기관, 지역의 각종 평생교육 협의회, 지자체의 평생학습관 등도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하는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

■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 활용 주체별 활용 방안

- □ 지자체는 평생학습도시 인정심사를 위한 기준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함. 특히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와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 매뉴얼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 현지심사 준비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는 평생학습도시 인정 희망 지자체의 인정심사에 있어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함. 특히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와 더불어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운영규정은 인정심사 전반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를 기획, 조정, 감독,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하여 거시적인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
- □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도시의 평가 인정을 총괄 운영함에 있어 평생 학습도시의 질 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 프레임웍으로 인정지표를

활용함. 더불어 인정지표를 기준으로 각 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도시 현황 정보를 공유하여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평생학습도시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시 인정지표를 각 지자체의 연수 요 구분석의 틀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정지표 자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단기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의 적용 시 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인정지표의 실행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제공. 특히 새로운 인정지표를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지표 및 현재 평 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하 여 각 지표의 정의 및 기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제언 제공. 중장기적으 로는 인정심사의 주요 주체로 인정지표를 활용하여 심사제도 운영 주도
- □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기관, 지역의 각종 평생교육 협의회, 지자체의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를 활용하여 각각의 평생학습적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공조와 협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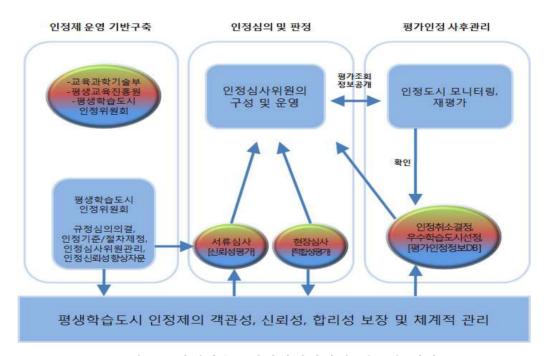
[그림 -6]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의 주체별 활용 방안

6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 운영근거: 법령 정비(평생교육법제15조 및 동법제7조 재개정통한 기구법 정화)
 - 평생교육법 제15조의 개정을 통한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기구의 법정화
- □ 주요기능: 인정기준 및 절차제정, 인정여부심의 및 판정, 인정취소 및 우수도시 결정 등 평생학습도시 인정제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



[그림 -7]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운영 방법

□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 회의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정의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확보 위한 기본 토대

- □ 평생학습도시의 인정·심의기구로 직무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 회 운영
- □ 평생학습도시 운영규정 제·개정 등 체계적인 인정제 운영 기반 조성
- □ 평생학습도시 인정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 평가 운영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인정업무를 객관적 이고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련 전문인사로 구성
 - 1.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2. 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
 - 3.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연구 및 관련 단체의 장
 -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과이 위촉하는 사람
-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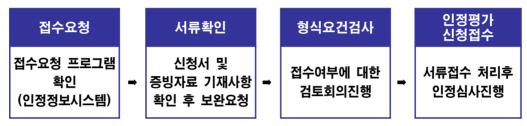
[그림 -8]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심의절차 흐름도

■ 평생학습도시 인정신청 및 인정심사

- □ 평생학습도시의 평가인정신청 컨설팅
 - 인정신청 및 인정제도 전반에 관한 온라인, 방문, 전화 컨설팅
 - 컨설팅 내용: 인정제도개요, 신청방법, 인정기준, 심사진행, 인정정보시

스템활용 등

- 인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생성, 수정, 변경되는 컨설팅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컨설팅지침 배포
- □ 평생학습도시의 평가인정 관련 형식요건 검사 및 인정접수
 - 인정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형식의 적정성과 인정기준 및 절차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인정심사 가능 건을 파악하여 인정심사 접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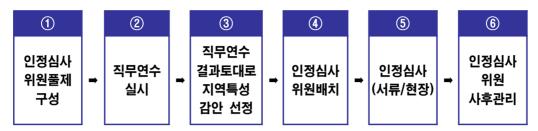


[그림 -9] 평생학습도시 인정신청 및 인정심사의 업무 흐름도

■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의 배치 및 관리

- □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의 배정
 - 평생학습도시 인정심사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최적 의 인정심사위원 배정
- □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의 배정기준
 - 평생학습도시 인정평가 영역별 인정심사위원의 전문영역
 - 인정신정 도시와 유사 분야의 경력자 또는 전문 직무연수 수료자
- □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의 관리
 - 인정심사위원의 인력풀 관리: 인정심사 및 이행사항 심사 등 인정심사위원의 원할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정심사위원에 관한 정보관리 및 제공
 - 인정심의위원의 지역, 연락처, 심사가능여부 등에 대한 관리
 - 인정심사위원의 제반활동(심사참여, 교육 및 직무연수 실적 등) 파악을 통한 인정심사위원 평가

□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의 관리절차



[그림 -10] 평생학습도시인정심사위원에 대한 관리 흐름도

■ 평생학습도시 인정 사후 관리

□ 평생학습도시 인정 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에 의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



[그림 -11]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사후관리전략

- □ 평생학습도시 인정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에 의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
 - 유효기간제 운영(4년), 유효기간후 재평가실시를 통한 재인정 및 취소결 정
 - 평생학습도시 인정 지차체에 대한 평생학습사업 컨설팅 및 모니티렁 실 시
- □ 평생학습도시 인정 유효기간제 운영(4년), 유효기간후 재평가실시를 통한 재인정 및 취소결정
 - 평생학습도시 인정을 받은 지자체는 인정받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

간(1~2년) 동안 평생학습도시 관련 공모사업 참여제한

-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인정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업이거나 사업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인정가능(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인정유효기간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 평생학습도시 인정 신청 제한
 - ① 인정사업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② 인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인정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실시한 경우
- □ 평생학습도시 관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평생학습도시 인정절차

■ 평생학습도시 인정절차의 체계적 구축

추진방침 수립 ·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 지자체

Ú

희망 지자체 접수

시・군・자치구 → 평생교육진흥원

Ú

1차 심사 및 추천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 서류심사

Ĺ

2차 심사 및 현지심사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현장심사평가단

Д

평생학습도시(LLC) 최종선정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Л

인정결과 통보 및 홍보

교과부 → 지자체, 언론 등 관계기관

Û

평생학습도시 사업실시 및 지원

지자체 ← 교육과학기술부, 진흥원

₹,

컨설팅 및 사후관리

교과부, 진흥원 → 지자체

Ų

우수 평생학습도시 인증 및 재평가

교과부, 진흥원 →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자체 및 시·도교육 청을 통해 추진계획, 세부인정평가지표 등을 시달 및 공고

자체평가서(증빙서류 포함)와 평생학습도시 사업신 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서(필요시) 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홍원에 제출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인정가지표에 의한 1차 서류심사실시, 일정기준 미달 지자체에 대한 관계 서류보완 지시 또는 인정심사 보류

평생학습도시 인정가지표에 의한 2차 현지심사, 현장점수 등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

세부 심사항목별 종합심사결과 토대로 심의 - 신청 지자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로 평생학습도시 최종 선정

인정결과를 해당 지자체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정서 전달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인정결과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사업실시 및 일부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한 지원

해당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사업계획, 집행, 평가 에 대한 컨설팅(희망지자체에 한함)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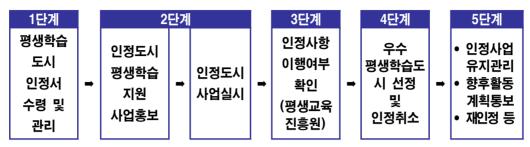
일정주기별로 해당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 및 우수지자체에 대한 Best 평생학습도시인증서 수여, 일정수준 이하의 지자체 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시인정서 미발급

[그림 -12] 평생학습도시 인정절차

■ 인정의 사후 관리전략

□ 평생학습도시 인정 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에 의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



[그림 -13]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 사후관리전략

- □ 평생학습도시 인정 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에 의 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
 - 유효기간제 운영(4년), 유효기간 후 재평가실시를 통한 재인정 및 취소결정
 - 평생학습도시 인정 지자체에 대한 평생학습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 평생학습도시 인정 유효기간제 운영(4년), 유효기간후 재평가실시를 통한 재인정 및 취소결정
 - 평생학습도시 인정을 받은 지자체를 인정받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 간(1~2년) 동안 평생학습도시 관련 공모사업 참여제한
 -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인정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업이거나 사업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인정가능(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인정유효기간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 평생학습도시 인정 신청 제한
 - ① 인정사업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② 인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인정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실시한 경우
- □ 평생학습도시 관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8.1 평생교육법 개정(안)

■ 법률 근거: 평생교육법 제15조 및 제19조

개정사유

□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조직을 법적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평생학습도시 인정제 실시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인정과 재 인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내용(안)

- 제15조(평생학습도시)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인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 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u>인정기준, 인정절차, 인정서의 발급, 인정의 취소 및</u>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의 2(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조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학습도시인 정위원회를 둔다.
- ②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 □ 종전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를 인정제로 변경(제15조 제1항)
- □ 평생학습도시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인정절차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5조 제2항)
- □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의 주체를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추진체제로서 평생교육진홍원을 명시화함(제15조의2)
- □ 평생교육진흥원의 임무로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제19조의 제4호)

8.2 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안)

법령 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 추가개정

개정사유

□ 평생교육법 제15조의 2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내용(안)

□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자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제7조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2. 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
- 3. 평생교육관련 학회 및 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u>④ 인정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u>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인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인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u>둘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인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3 명생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

- 법령 근거: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추가 개정
- ➡ 개정사유
- □ 평생교육법 제15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인정절차 및 기 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화하기 위함
- 개정내용(안)

- 제5조(평생학습도시의 인정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 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 시·군 및 자치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u>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도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인정계</u> 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조사·확인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인정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전문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평생학습도시인정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필요한 평생학습기반 및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갖춘 시·군 또는 자치구이어야 하며, 해당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 2.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전담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필요한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 함
 -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상응하게 구성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기반, 평생학습시책,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담 시설 등에 관한 세부기준 기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장관이 정한 다.
- 제7조(인정의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인정을 받은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평생학습도시인정의 공고)**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2라운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양 병 찬 교수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2라운드 평생학습도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999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에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왔다.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그러한 정책 성장을 견인해왔던 주요 시책의 하나라는데 대부분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중앙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기조와 이에 비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지방 정부의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그리고 이를 받치고 있는 주민들의 학습 열기 등이 현재 2라운드 평생학습도시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일 것이다. 한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히트상품"이라고 불리던 학습도시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매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관·학계의 노력으로 인정제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본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기존의 학습도시 정책 자체가 국민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보편적 조건 정비를 조장하였는가? 새롭게 인정제로 가면 또 어떻게 될것인가? 그 때의 중앙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지방정부의 평생교육정책 참여에 어떠한 촉진이 요청되는가?

1. 정책 전환의 원인(예산 삭감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의 정책 이니셔티브 확보 실패, 그러나 여전히 높은 정책 수요(지자체의 학습도시 지정 열망)

→ 정부의 예산 확보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따라서 인증심사의 결과에 따른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

2. 지정 정책의 딜레마(종자돈 사업, 사후관리 문제)

2001년 사업 출발 당시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한 것은 종자돈 지원

이었다. 선발된 지자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식은 특정한 지자체의 특수 시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습도시로 지정된 후에 이 정책의 근원적인 매력(주민의 참여, 지역의 내발적 성장, 기존 평생교육 행재정적 재구조화 등)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습도시라는 '명패'에 만족하는 지자체들도 있어 학습도시간의 사업 운영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어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학습도시 정책의 성과 : 지자체의 평생학습정책 보편화

본 정책은 전체 지자체(광역시 포함)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지원체제의 강화를 통한 학습도시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1라운드 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는 지자체로 '평생교육'이라는 정책 개념이 들어갔던 것으로, 학습도시 사업 이후 지자체들의 주민 요구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등의 법적 환경 변화, 행자부의주민생활지원 관련 조직 개편 권고 등이 이어졌고 그 이후 거의 모든지자체에 평생교육과나 평생학습계 등의 조직이 구성되면서 보편적조건 정비적 정책 형성의 토대가 마련된다.

4. 새로운 정책 방식의 목표?(단계적인 목표 설정과 근원적 지향점)

인정제로 정책 전환이 되었을 때, 그 시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열망하는 지자체의 학습도시 의지를 찾는 것인가? 우수 학습도시를 찾는 것인가? 질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가? 지자체전체가 학습도시화 되는 것인가? 인정제 전환으로 지자체의 평생교육정책을 프로모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한다. 인정 절차에서 희망 지자체 접수(21p.)가 있는데 재정적 지원 등의 당근이 없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희망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정 받은 지자체에 대한 인정 취소는 쉬울 것인가? 이런 많은 숙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당면한 과제일 것이고 보다 근원적인 학습도시 정책의

방향은 지자체 전체의 학습도시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존의 지정제도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인정제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이런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 한국의 모든 지자체가 학습도시개념을 정책 개념으로 도입하여 모든 지자체가 학습도시로 재구조화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추진과 함께 평생교육정책 전달 체제의 명확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의 중앙정부-광역-기초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구조가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필수적

발표자께서 제기하신(9p.)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규정의 필요성에서 국가 지정방식이든 지자체 자율방식이든 지방 정부의 평생학습조례의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통해서 이 정책이 사업이 아닌 지방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몇 몇 학습도시 등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평생학습이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우리 지자체의 정책 추진에서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는 평생교육법의 개정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나타난 정책 추진 조직의 난맥이나 중앙 정부의 평생교육 조장 행정에 비해서지방 정부의 반응은 의외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경기도나 서울시의 평생학습정책화 등). 이처럼 사업이 아닌 법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되는 기반을 찾아야 한다.

6. 인정제 운영 방식 : 자치적 협의체(학습도시협의회) 운영 vs. 정 부의 평가체제

인정제도의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도 그 운영의 워리가 무엇인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습도시들이 상호인증하는 질관리 구조(내부규제적)를 가져 갈 것인지 정부의 질관리 평가체제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 주체, 방식, 추가 지원 등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안과 같이 정부의 평가 체제 방식이 되려면 모든 지자체의 책무로서 평생교육이 정책 개념으로 지방정부에 시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우수학습도시 인증과 그에 대한 지원방식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7. 질관리 프레임웍과 관련 사업의 연계

발표자의 지적처럼 인정제의 핵심 개념인 질관리 프레임웍은 학습 결과 표준화 사업(교육계좌제)이나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우수 프로그 램 지원 사업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 중에 일부는 중 앙 정부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8. 법령 개정(안) 내용과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자체도 인정 신청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인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할 것인가? 도시인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가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행규칙(안) 제6조1항의 --필요한 인력-- →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바꾸어 규정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약습도시 인정제 도입에 대한 단상

이희수 교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평생학습도시 인정제 도입에 대한 단상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발표자는 기존 지정제도의 한계점으로 11가지 항목을,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의의에 대하여 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계점과 가능성' 논리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며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노 파심에서 단견을 제시함.
- 중요한 지정제와 인정제 특징 비교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 이의 논적 근거, 이론적 근거, 유사제도 및 법률적 근거 등에 기초한 것 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음.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지정제는 나 쁜 것, 인정제는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편파적, 작위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한계점에 기초하기보다는 성과와 맥락 부분을 강화해서 국가와 재 정지원이란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평생학습도시가 진화했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국가보다는 민간 전문단체,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전향적, 선제적 대응으로 보이며, 다소 상충되는 많은 필 요성 나열은 때로는 구차한 변명으로 읽혀지지 않도록 정선할 필 요가 있음.
- 지정제와 인정제의 추진체계 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지정제와 인정제와의 차이와는 달리 대동소이하거나, 재정지원만 제외하면 오히려 기존 지정제에 비해서 국가와 준국가기구의 역할이 강화되

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과부, 진흥원, 인정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서 인정제 취지에 부합되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인정제로 간다면, 전문단체, 직능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시민사회-시장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 점에서 학회와 총연합회,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언론사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향후 설립 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 같음.
- 실효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지정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 전에 지정된 것이며, 따라서 명확한 법률적 기반 없이 잘 해왔으며, 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2007년 12월 법개정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논리보다는 다른 논적 근거를 찾아야 할 것임. 인정제로 간다면 굳이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 논리도 필요함.
-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32.8%인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인정대상 및 풀이 고갈될 전망이며, 비록 약 4년 정도의 유효기간제로 풀의 부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낙관적 견해로 비쳐지며,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이 사업의 메리트를 진지하게 검증해볼필요가 있으며, 마을과 동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은 평생학습도시 살리기의 일환이어야한다.

백은순 본부장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은 평생학습 도시 살리기의 일환이어야 한다

백은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 본부장)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도시 자체가 주민의 학습 수요를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사업이 다. 이 사업은 10년간 지속되어 왔건만 2007년 이후 신규지정이 되 지 않아 새로운 도시의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회계에 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에 의한 사업이 이우어져 재원 구조가 매우 취약한 사업이다

○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평 생학습도시와 비 평생학습 도시 간의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 평생교 육프로그램의 적합성 차이, 선거율투표참여율 차이, 도시 주민의 유출 방지율 차이 등 여러모로 평생학습 도시의 전반적인 성과가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 평균 수명 연장,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지식 기반 사회도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성인의 학습은 이제 도외시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성인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회에 인식되어 있건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성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제 2차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에서도 2012년까지110개의 도시를 지정하겠다고 공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76개에서 신규 지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원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지정제에서 인정제로의 전환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하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지정제이든 인정제이든 간에 이는 방법론 상의 논의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착되어 소 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지속할 수 있게 하 는 재원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에 의 한 교부방식은 시도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 생학습 도시 지원과는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방식이다. 따 라서 평생학습 도시 인정 및 운영관리 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법상에 지정하고, 필요재원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높으리라고 본다. 출연금 확보가 어렵다면 최 소한 일반회계에 의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정제 특히 현행의 무기한 지정제는 기한이 없다는 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제도이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더라도 지정 후에는 '이미 지정을 받아 더 이상 지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노력하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달성 정도를 다시 평가하여 인정하는 기간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발제제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밖에 없는 기준과 그리고 특 성화에 따른 기준 등의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최종 결과에 의한 심의뿐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여 발전한 정도까지도 포함하여 심 의를 하게 되어 총괄 평가 뿐 아니라 형성 평가까지 포함하게 될 것 이며, 이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시간의 선의의 경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인정위원회를 세 축으로 하여 운영하려는 기본 안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 인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등에 관해서는 현실성있는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고 본다

- 제시한 안에 따르면, 인정위원회에서 인정기준 제 개정, 심의 의결, 취소판정, 인정심사위원 선발. 평생학습 도시 사업결과 기록유지, 관리 조치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인정위원회의 일감은 조직이 아니면할 수 없는 사실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정위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한다. 사무국을 둘 정도의 규모이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도 필요할 지인데 사무국까지 가진 인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인정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구체적인 일감에 해당하는 인정기준 작성 및 변경, 취소 판정까지에 이르는 조사 업무, 판정업무, 심사위원 선정과 인정에 따르는 행정 집행 기능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하는 것이 현실성 있을 것이다.
- 평생학습도시 인정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산하, 또는 평생 교육진흥원장 산하 양 쪽이 다 가능하다고 본다. 전자로 기능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도시를 관장하면 본부의 본부장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본다. 이 경우 당연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직업교육국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처간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국장을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평생학습도시는 또한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같이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제시된 안에는 시군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서류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시군 자치구에 대한 일차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심사를 하는 것이지역의 특성 살리기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고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선정기준 작성부터 같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조문 중에서 수정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몇가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한 내용은 1)국가의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기술하고, 2)인정위원회를 법상의 기구로 하되 대통령령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3)평생학습도시 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내용을 시행규칙, 또는 인정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관하여 업무상발생하는 상세변화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4)시행규칙에 인정기간, 취소 등의 행정상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는 안이다.

분	제시된 안	수정의견
야	제15조(평생학습도시)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 , ,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	
	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u>인정</u>	지원해야 한다.
	및 지원할 수 있다	
평	제15조의 2(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생	<u>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교육자학기불구 경단의 경인다.
교	령령으로 정한다	
육 법		
H	게 10 구 (대 체 그 ㅇ 키 중 이) (죠) 게 1 로고세 메 근	이것 미 기이 코기세 코칭
	제19조(평생교육진홍원) ④ 제 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운영	
행	등) ① 법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생	② 위원은 이하 자세한 사항을
령	학습도시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라	시행규칙 또는 평생학습도
제	<u>한다)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 인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서 정하도록 함.
7조	으로 한다	<u> </u>
시		인정기간에 대한 진술이 없는데
행 규		4년으로 한다는 기간을 기술 필
I 칙		<u>\$</u>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는 이를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
	제7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	의 장에게 통보한다. 해당 자치
	호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느 사다한 기가요 저희성 시구 또는 기	구가 이의가 있을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군 또는 자 치구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지정토론

> 이현숙 소장 (이천시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

이현숙 (이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로부터 인정제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 안'에서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며, 평 생학습도시 및 비평생학습도시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법이라는 것은 제도를 위한 근거이어야 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형법과는 달리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다 해도 되고, 또 안해도 그만인 조항들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및 국민들이 평생교육법에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한다.

인정제 도입시 평가지표에는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조례 제정 유무, 평생교육사 유무, 평생교육 추진 전담 부서 유무 등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될 거라 예상되지만 이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행정적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개정(안) 제6조 평생학습도시인정의 기준에 1항 1호에는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인력 확보 또는 평생교육사 확보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2호에도 교육 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조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체제를 강화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

2. 인정제와 지정제의 차이

발제문에서 지정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특정한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인정제는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대상에 대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했던 평생학습도시 지정제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인정제가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단지 예산 지 원의 차이인지,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지정제를 선호했던 것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활성화와 예산지원으로 232개 지자체 중 100까지 지정한다는 희소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제로 전환하면 일정 자격이 되면 어느 지자체나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되는 절대평가이므로 예전과 비교해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평생학습도시 인정에 대한 붐이 일어날 것인지, 과연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것인지, 평생학습도시라는게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인정제에 의해 평생학습도시가 늘어난다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고민해야한다.

인정제이든 지정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므로, 예산 지원은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은 일관성 없이 초창기에는 2억원이 지원되었지만 5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매년 2억원 등으로 변경되었다. 인정제도 전환 후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정지표에 의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시 특색에 맞게 진행해야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변질되거나 퇴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정지표에만 매달려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인정지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홍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역할

평생학습도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에따라서 활발히 운영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을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지만 학습도시에서 원하는 국가 차원의 역할에 미치지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홍원에서 인정제도를 일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산지원 및 원장 권한에 대해 법령 개정안에는 없고, 교과부 장관이 정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는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홍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에게 위임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진홍원의 위치 와 역할은 지자체와 수평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평생교육진홍원과 지 자체가 상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현실로 실현할 때에 문제점이 야기된다.

발제문에서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인정지표의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인정지표의 실행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100개까지 한정했을 때 자치단체장들간의 협의와 평생학습 진흥에 힘쓰기 위해 구성되었다. 회비 납부 회원은 고정되어 협의회가 운영되었는데, 인정에 의해 회원이 계속 바뀐다면 인정지표 활용 등의 역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교육국이 신설되어 경기도 시·군대상으로 평생

학습도시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인정제에 신청할지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서로의 계획이 공유가 되어 인정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학습도시 지정 전에 지자체에서 학습도시를 선포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경우도 있다. 평생학습도시 브랜드 자체가고유 명사가 되고 국가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실히 해야 유사명칭 사용 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4. 인정 후 인센티브 방안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인정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나, 인정 후 지원이 없다면 결국 필요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지 자체에서는 인정제를 시행하면 국가가 무엇을 해줄건 지 기대하고 있 으며, 인정받은 후 인센티브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에서는 소소한 걸 지정하더라도 인센티브가 확실하므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줘야 한다. 예를 들어 저명한 공인기관에서 인증 또는 공영방송과 연계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한 지원을 해줘서 평생학습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해야 한다.

5. 학습도시와 비학습도시 인정에 대한 융통성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이미 7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제도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노력했던 예비학습도시와 학습도시를 준비하는 도시가 30개 이상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부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기존의 평생학습도시는 비학습도시에 비해 인정제도에 진입이 수월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학습도시는 인프라 구축과 사업실적 등 학습 도시에 비해서 점수가 낮게 평가될 것이다.

학습도시 대 비학습도시간의 평가지표를 구분하거나 기준점을 다르게 하여 측정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김규태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

발 의 자: 의원 찬 성 자: 인

제안이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76 개의 지방자차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 당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되고 활성화 되는 등의 성 과가 있었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제도여서 지역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어렵고, 평생학습도시의 양적 확대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지정제도를 인정제도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정제도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지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정을 함으로써 인정받은 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인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하여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며,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 지역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를 운영하 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두 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정"을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평생학습도시의 인정기준, 인정절차, 인정서의 발급, 인정의 취소 및 사후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① 평생교육진흥원에 제15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 으로 평생학습도시를 <u>지정</u> 및 지원할 수 있다.	<u>인정</u>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u>평생학습도시의</u> <u>지정 및 지원</u>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평생학습도시의</u> 인정기준, 인정절차, 인정서의 발급, 인정의 취소 및 사후관리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③	
(생 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8.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 10. (생 략)	9.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
5~ (* * * * * * * * * * * * * * * * * * *	10. 11. (단 6 제 5도 및 제 10도 와 같음) ⑤~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
<u>` </u>	회) ① 평생교육진흥원에 제15 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인정위

 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인 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